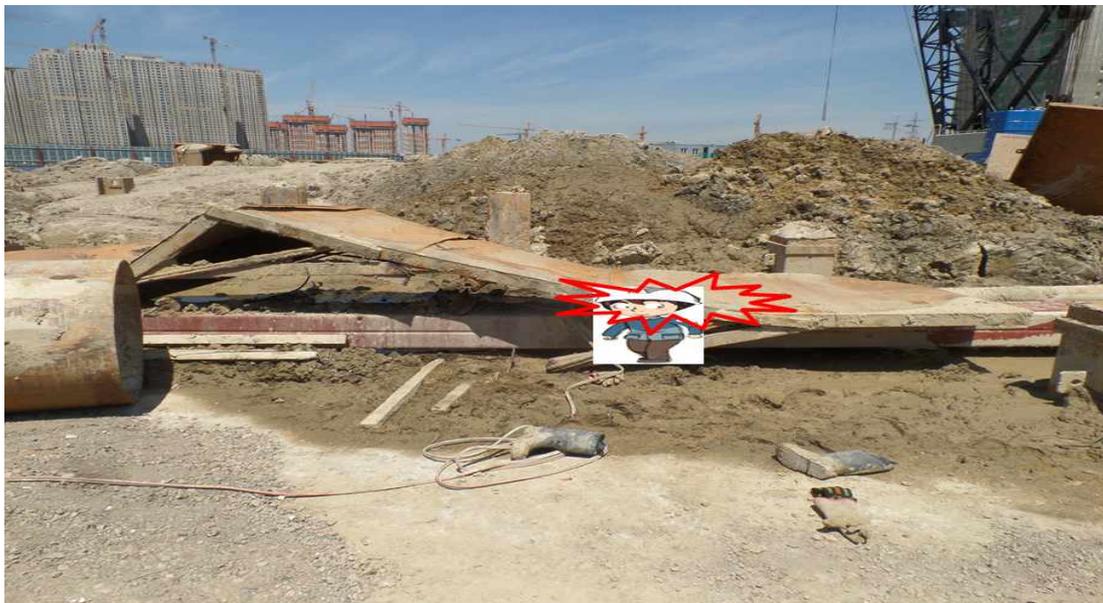


## 토사 비산방지용 가림막 해체작업 중 붕괴

공 사 명	○○신축공사	발생일시	2018.05.21.(월) 18:20경
재해형태	붕괴	재해정도	사망 1명
소 재 지	인천시 ○○구	공사규모	지하4층 지상49층 8개동
재해개요	2018년 05월 21일(월) 08:20경 인천 ○○구에 소재한 ○○건설(주)에서 시공중인 「○○ 아파트」 현장에서 협력업체 ○○건설(주) 소속 근로자인 이○○(58세, 남, 용접공)이 파일항타작업 중 토사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림막(약 1.5톤)을 해체하기 위하여 용단작업을 하던 중 가림막이 붕괴되며 가림막과 받침용 빔 사이에 협착되어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.		

### 재 해 상 황 도



안전대책

○ 중량물의 취급작업 및 건물 등의 해체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철저

- 사업주는 중량 약 1.5톤의 철골 가림막 등 중량물의 취급작업 및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아래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.

1. 중량물의 취급작업

- 가.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
- 나.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
- 다.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
- 라.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
- 마.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

2. 건물 등의 해체작업

- 가.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
- 나. 가설설비·방호설비·환기설비 및 살수·방화설비 등의 방법
- 다. 사업장 내 연락방법
- 라. 해체물의 처분계획
- 마. 해체작업용 기계·기구 등의 작업계획서
- 바.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
- 사. 그 밖에 안전·보건에 관련된 사항

○ 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업지휘자 지정 및 작업지휘 철저

- 사업주는 중량 약 1.5톤의 철골 가림막 등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.

○ 위험성평가 미실시

- 사업주는 가림막 등 중량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전 위험성평가 회의를 통해 사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평가의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기록·보존해야 하며 해당 작업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상태에서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.



현장 바닥에서 바라본 피재자 사고직후 발견장소 모습



재해조사 당시 피재자가 사용한 산소절단기 모습



재해조사당시 용단작업면 모습



재해조사당시 타 항타기 가림막 설치모습